

충청북도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지역 내 공해피해주민의 이주대책추진과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세면제)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지역 내 공해피해 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이주하는 이주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충청북도 관내에서 대체 취득하는 주택지, 농경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

다만,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(최종 수령일을 말한다)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지, 농경지 및 주택을 취득 또는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사무처리의 위임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
제4조(면제신청등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③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3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.